

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-11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유망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인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5조(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운영의 위탁)

2)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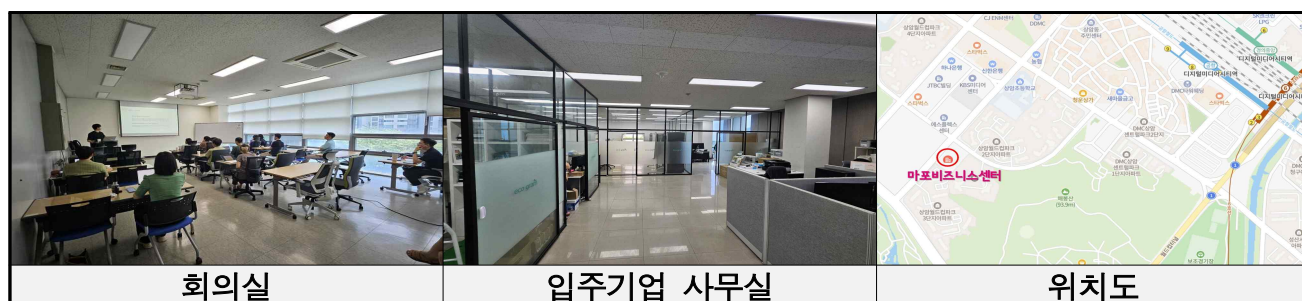
- 마포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,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있어 사무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됨
- 적정 규모 이상의 조직·인력 및 창업기업 관리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도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

- 1) 입주기업의 모집·선발·관리
- 2) 입주기업의 경영·기술·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3) 입주·졸업 기업간 교류 지원
- 4)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
- 5) 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센터 명: 마포비즈니스센터
- 2) 시설유형: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(BI)
- 3) 소재지: 마포구 매봉산로 18, 마포창업복지관 4~6층 (상암동)
- 4) 시설규모: 2,773.09㎡ (약 838평), 창업보육실 20개실



마.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7. 12. 31.(2년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식: 재위탁(재계약)

- 선정주체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(2026년)

1) 소요예산: 150,000천원(구비 100%)

2)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, %)

구 분	산 출 내 역	소요예산액(비율)
총 계		150,000(100%)
인 건 비	○ 운영인력 3명(센터장 1, 사무국장 1, 매니저 1)	98,000(65%)
입주기업지원비	○ 멘토링, 창업프로그램, 사업화지원금 등	24,200(16%)
센터운영비	○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홍보비 등	27,800(19%)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위탁할 수 있음
- 2) 창업기업 보육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운영이 기업의 기술개발,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있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됨

자. 민간위탁 추진일정 ※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- 1) 2025. 10월: 구의회 동의
- 2) 2025. 10월: 수탁기관 재위탁(재계약) 추진계획 수립
- 3) 2025. 11월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
- 4) 2025. 11월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5) 2026. 1월~: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시

3. 참고사항(관계 법령)

[지방자치법]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[중소기업기본법]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)**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·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[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- 제13조(운영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, 정보 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[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-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